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1차 정례회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9. 1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호로 2018년 8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마을자치센터의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사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자치센터 운영 및
관련사무

-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 공동체 분야사무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상담·홍보
-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민자치 분야

-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
-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 운영
- 주민자치 사례 기록 및 아카이빙
-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
- 주민자치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 그 밖에 주민자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마을자치센터 운영인력(안): 총 11명
 - 센터장 1명, 마을팀 3명, 자치팀 2명, 동자치지원관 5명(5개 시범 동별 각1명)

- 운영방법: 전문기관 선정 민간위탁운영
 -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 소요예산(2019기준): 금654,480천원(시비) (단위:천원)

분야	소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고
마을	290,000	155,927	21,760	112,313	
자치	364,480	287,480	7,000	70,000	
계	654,480	443,407	28,760	182,313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지원센터 설치), 제24조(관리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4. 검토의견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자치 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 예산지원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 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상정](2018.9.7)

-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13.12.12>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3.12.12>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혁신정부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9. 1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호로 2018년 8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 교육분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제2조)

나. 협의회 구성 (안 제3조)

다. 협의회 임원 (안 제4조)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

라. 총회 및 의결(안 제6조)

마. 실무협의회(안 제11조)

바. 경비부담(안 제12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나. 예산조치: 협의회비는 논의 후 추후 결정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되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전에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동의)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회원의 구성과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총회 및 의결에 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의안의 제출, 의견정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부칙에서는 협의회 회칙의 효력발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31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방교육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제도개선, 조사·연구, 관계 기관에 건의 및 협의’ 등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교육문제의 해결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입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협의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부합되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152조~158조)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9. 1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6호로 2018년 8월 31일 영등포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출연금액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영등포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구축·운영	62,215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5. 검토의견

○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에 따라 2018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됨.

○ 이번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 총 사업규모는 6,200만원으로서

-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1,700만원,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 등 4,500만원이 출연금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음.

○ 이 사업은, 영등포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때 서로 다른 도서관에 해당 도서 자료 목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상호대차 서비스”이며,

1)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자료를 서로 대여해줌으로써 도서 자료의 구입 예산 절약 및 서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이용자의 다양한 도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함

○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 따라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